
2015年度 3次
定期監査 報告書

2016. 3

국립암센터
[감사팀]

I

감 사 개 요

1. 목적

의료장비 도입 및 진료재료 구매 절차, 진료일정 변경 관련 복무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관계규칙의 미준수 및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수감부서의 업무의 적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분야 등

감사분야: 의료장비 및 진료재료 관리 실태 등

실시기간: 2015. 11. 16 ~ 2016. 3. 14

※ 2차 정기감사 마무리 및 의료기관 인증준비로 감사자료 제출기한 등 연장 포함

대상기간: 2012. 1. 1 ~ 2014. 12. 31

3. 실시계획

감사인력

○ 감사추진: ○○○(팀장), ○○○, ○○○, ○○○

중점감사사항

○ 의료장비의 자산 등록, 도입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진료재료 구매, 정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진료일정 변경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속병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감사방법

- 관련자료 서면검토, 현장실사 방문 및 관련부서장 면담
- 타 기관 감사사례 및 업무추진 사례조사 참조
- 법인감사 지시사항 및 기관장 요청사항 등 반영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자문의뢰 및 공공의료기관 벤치마킹 등

□ 감사성과

- 의료기기, 의료비품의 도입절차 및 자산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료기기 도입 심의의 적정성 및 자산등록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함.
- 진료재료의 구매 절차 및 자산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후정산 제도의 마련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관리를 도모함.
- 기타 부속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해당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관의 경영성과를 제고함.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지적·조치사항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명, 천원, 건)

총 건 수	합 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9	-	-	-	-	-	8	-	1

2. 지적사항 명세

지적사항 명세	처분요구 ¹⁾	관련부서
① 의료장비 분야		
가.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의 자산등록 개선	개선	의 공 학 과 장
나. 의료기기 도입 심의 검토절차 개선	개선	의 공 학 과 장
② 진료재료 분야		
가. 진료재료 특성을 고려한 사후정산제도 마련 필요	개선	물 류 관 리 팀 장
나. 부외자산 등록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개선	물 류 관 리 팀 장
③ 진료일정 및 복무관리 분야		
가. 진료일정 및 예약변경 운영 현황 개선 필요	개선	원 무 팀 장
나. 휴진(대진) 및 복무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필요	개선	원 무 팀 장 인 사 관 리 팀 장
④ 기타 분야		
가. 외부의사 수술·진료수당 청구 철저 및 지급기준 명확화 필요	개선	특 수 암 센 터 장 의 료 지 원 팀 장
나. 법정감염병 신고절차 개선 및 관련 교육 마련	개선	감 염 관 리 실 장 원 무 팀 장
⑤ 우수 사례		
경제적 취약환자 후원증대를 위한 업무개선	통보	인 사 관 리 팀 장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통보, 고발 등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종류	내 용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적용하는 조치
징계 또는 문책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법령 또는 소속기관 등이 정한 징계사유(징계) 또는 문책사유(문책)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추징·회수·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경우에 적용
개선	공공기관 등의 자체규정 또는 제도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용
권고	주요시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분야에 대하여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사항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결과 지적·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1 **의료장비 분야**

가. 연구기기 및 연구비품의 자산구분 기준 마련

[현황]

- “자산관리규칙” 제4조(분류), 제7조(자산관리담당)에 따라 물류관리팀은 자산을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분임자산관리 담당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사용·출납 등에 관한 책임이 있음.

[문제점]

-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의 경우 자산분류 기준이 없어, 동일품목이 의료기기와 의료비품으로 자산등록이 혼재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었음.

[처분내용]

-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의 자산구분 기준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자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한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의 자산등록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을 조치요구

[처분결과]

- 개선 (의공학과)

나. 의료기기 도입심의 검토절차 개선

[현황]

-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칙” 제2조(심의사항)에 따라 의료기기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의 도입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의공학과장(간사)은 의료장비도입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심의자료로 제공해야 함.

[문제점]

- 타기관의 경우, 의료장비도입신청서 양식에 기술검토·수익성·시설·전산 등 검토 항목이 포함되어 실무부서의 검토의견 수렴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립암센터는 실무부서 검토의견 수렴절차가 없으므로 심의의 적정성·효율성을 위해 검토절차 마련이 필요함.

[처분내용]

- 의료장비 도입 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 의료기기 도입 시 검토항목에 대한 실무부서의 검토의견 수렴절차 마련을 검토할 것을 조치요구

[처분결과]

- 개선 (의공학과)

2

진료재료 분야

가. 진료재료 특성을 고려한 사후정산제도 마련 필요

[현황]

- 자산의 취득은 자산관리규칙 제19조(자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 납품·검사, 대가지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진료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거쳐 진료재료를 납품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문제점]

- 국립암센터는 최근 1년간 진료 및 검사 등을 위해 선납받아 사용하고 사후 정산한 진료재료가 동위원소 및 수술 재료 중 일부 있지만,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자산관리규칙에 없음.

[처분내용]

- 진료재료 특성 및 수술재료 긴급구매와 같이 선 조치가 필요한 재료에 대하여는 관련규칙에 사후정산 제도를 마련하여 제도권 내에서 해당 재료를 취득,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조치요구

[처분결과]

- 개선 (물류관리팀)

나. 부외자산 등록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현황]

- 물류관리팀은 자산관리규칙 제2조(자산의 범위)제3항에서 정한 부외 자산 관리 품목은 물론, 관리품목 및 범위를 확대하여 자산적 가치가 있는 고가의 물품도 부외자산으로 관리해오고 있음.

[문제점]

- 국립암센터의 경우 의료소모품이 비록 소모성 물품이지만 고가인 물품에 한하여 부외자산으로 등록·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이중 CT-Tube 등과 같이 상당히 고가이면서 실제 사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자산적 가치가 있는 의료소모품의 경우도 부외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처분내용]

-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부외자산으로 등재·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조치요구

[처분결과]

- 개선 (물류관리팀)

3 진료일정 및 복무관리 분야

가. 진료일정 및 예약변경 운영 현황 개선 필요

[현황]

- 진료일정 정보제공 취지는 환자가 진료일정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진료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시간 이전에 진료일정을 조정하여 국립암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음.

[문제점]

- 국립암센터는 최근 1년 30일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진료일정을 변경한 건이 일부 있었고, 이중 사전에 변경이 가능한 국내외 학회 건이 다수임.
 - 또한 휴진 취소 통보 건도 30일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를 통보하고 있어 진료일정 변경 최소화 등을 위한 제도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처분내용]

- 휴진(대진)신청을 충분한 시간 전에 변경하도록 “진료일정 및 예약 변경”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의료진이 휴진(대진)신청 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조치요구

[처분결과]

- 개선 (원무팀)

나. 휴진(대진) 및 복무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필요

[현황]

- 의료진이 휴진(대진) 신청 시, 휴진(대진)통보서를 작성하여 원무팀으로 송부해야 하고, 복무가 필요한 휴진(대진) 사유인 경우에 한해 복무관리 시스템에서 복무신청을 신청해야 함.

[문제점]

- 국립암센터는 의료진이 휴진(대진) 신청 시, 복무와 관련된 “학회 또는 출장, 휴가 등”에 대해서는 휴진신청과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복무를 신청함으로써 인하여 복무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음.

[처분내용]

- 휴진(대진) 및 복무신청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조치 요구

[처분결과]

- 개선 (원무팀 및 인사관리팀)

4 기타분야

가. 외부의사 수술·진료 수당 청구 철저 및 지급기준 명확화 필요

[현황]

- 외부의사 수술·진료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지급기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외부의사의 원내 수술·진료 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 지급기준 오적용으로 과지급 및 지급기준과 달리 다르게 적용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어,
 - 지급기준을 명확화 하여 적용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청구서 양식(전자결재)이 규칙의 서식과 달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처분내용]

- 외부의사 수술·진료 수당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수당 청구서 양식(전자결재)을 규칙에 맞게 수정하여 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외부의사 수술·진료수당을 적정하게 청구·지급할 것을 조치요구

[처분결과]

- 개선 (의료지원팀 및 특수암센터)

나. 법정전염병 신고절차 개선 및 관련 교육 마련

[현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에 따라, 의사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²⁾,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기한 내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 의사 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진료의사가 신고서 작성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작성 지체 및 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감염클리닉에서 신고서 확인 후 원무팀에 유선요청을 해야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어 시간지체 및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절차에 개선이 필요함.

[처분내용]

- 의사 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교육을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여 법정전염병 신고업무를 지체없이 수행할 것을 조치요구

[처분결과]

- 개선 (감염관리실 및 원무팀)

2)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5 우수사례

가. 경제적 취약환자 후원증대를 위한 업무개선

[현황]

- 국립암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7조(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

[개선사항]

- 사회사업실은 사각지대의 경제적 취약환자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①사회복지사 직접 선별절차 및 원무팀 협조 체계 마련, ②국가지원사업 홍보매체 다양화 및 홍보활동 강화, ③후원 기관 매뉴얼 개발 및 활용 등 업무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최근 4년간 경제적 취약환자에 대한 경제적 후원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대비 2014년 후원금액은 약1.2배 증가하였으며, 누적 후원기관도 약 1.7배가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후원을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기관 위상제고에 기여함.

[처분내용]

- 우수직원 또는 우수부서 포상 시 동 모범사례를 적극 추천할 것을 조치요구

☞ 관련부서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사회사업실

[처분결과]

- 통보 (인사관리팀)